

부속서 20A
모범절차규칙

적 용

1. 이 규칙은 제20.9조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 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제소 당사국이라 함은 제20.6조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중재패널이라 함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을 말한다.

3. 이 규칙에서의 언급된 조항은 제20장(분쟁해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

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

4.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20.6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 요구에서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유와 함께 법적 또는 사실적 조사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 권고도 함께 하며, 아울러 제20.11조 및 제20.12조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회가 지명되는 때, 합의된 위임사항을 패널에게 즉시 부여한다.

6. 제소 당사국이 사안이 혜택을 무효화 또는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위임사항에 기술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7. 각 당사국은 최소한 4부 이상의 자국의 서면입장 사본을 패널에게, 그리고 1부를 타방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8.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후 1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을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접수 2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9. 제7항 또는 제8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의 경우, 각 당사국은 동 문서의 사본을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다른 전자전송 방법으로 타방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10. 당사국은 언제든지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지,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서류상의 경미한 사무 오류를 변경 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정정할 수 있다.

패널의 운영

11. 패널 의장은 모든 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의장에게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2. 이 규칙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계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되는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 또는 법정 속기사(지정된 서기)를 고용하고 패널 심의에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패널위원 및 패널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은 패널 절차의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패널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패널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날에 시작하여 승계인이 지명되는 날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

16.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패널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상 또는 행정상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청문회

17.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다른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청문회 날짜와 시간을 정하며,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청문회 날짜·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18. 청문회 개최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개최장소는 제소 당사국의 영역 내를 첫 장소로 하여 양 당사국 영역 간에 교대로 한다.

19. 청문회는 패널에 의하여 제소 당사국 및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패널의 결정

20. 패널은 총의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패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의 이용 가능성

21.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청문회, 심의 및 최초 보고서 그리고 패널에 대한 모든 서면 입장, 그리고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 입장을 언제든지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국영 또는 민간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 비밀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당사국은 서면입장에 포함되거나 또

는 패널 청문회에 제출된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다.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타방 당사국이 패널에게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 라. 각 당사국은 패널절차에 관련된 자국의 전문가·변역사·통역사·법원 서기(지정된 속기사) 및 그 밖의 개개인이 패널 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22. 패널은 패널절차에 고용된 보조원, 법원 서기(지정된 속기사) 또는 그 밖의 개개인에게 지불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라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